



고용노동부

##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

수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소유주 귀하  
(경유)

제목 「이동식 크레인」 및 「고소작업대」 안전검사 여부 의견서 제출 안내

1. 관련 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
2. 이동식 크레인\* 및 고소작업대 차량\*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한 내에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,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.
3. 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소유하신 차량이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,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.

\* 이동식 크레인(카고 크레인, 집게 크레인, 렉커 크레인 등), 고소작업대(스카이, 활선차 등)

\*\* ① '97.10.30일 이전 등록차량은 '17.10.31까지 검사 ② '97.10.30~'08.12.31.등록 차량 '18.4.30.까지 검사  
③ '09.1.1.~15.11.1 등록차량은 '18.10.31까지 검사 ④ '15.11.1.이후 등록 차량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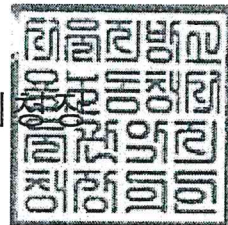
4. 만약 귀하가 소유한 차량이 ①안전검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, 또는 ②'18.6.5. 이전에 안전검사를 접수 신청하였거나, ③안전검사 비대상 차량\*에 해당하는 경우, 붙임1 의견서를 작성하여 '18. 7. 20.(금)까지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팩스 02-6711-2969)

\* (안전검사 제외 대상) 이동식 크레인 정격하중 2톤미만 차량, 크레인 탈착차량, 비영리 목적 사용차량(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한함), 매매용 차량 등

※ 자세한 문의 : 안전보건공단(서울지역본부 안전인증부 ☎ 02-6711-2967)

- 붙 임 1. 의견제출서 양식 1부.  
2. 안전검사 제도 참고 자료 1부.  
3. 안전검사기관별 지정검사장 현황 1부. 끝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



근로감독관 권수정      산재예방지도 전결 2018. 6. 28.  
과장 이춘민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4194      (2018. 6. 28.)      접수

우 08390     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( 구로동 222-30 서  
울관악고용노동지청) / <http://seoulgwanak.moel.go.kr/>

전화번호 02-3282-9092      팩스번호 02-6915-4366      / [lovesaegun@korea.kr](mailto:lovesaegun@korea.kr)      / 비공개(6,7)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